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이미 위반 상태인 건축물을 모르고 매수한 경우라든지, 위반 면적이 아주 경미한 경우, 또한 임차인이 있어 바로 시정하기 힘든 경우 등은 고의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상 감경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컸습니다.
-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경우에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즉, 기존 위반건축물을 매수했을 때, 위반 면적이 미미할 때,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 시정하기 어려울 때는 이행강제금을 3년 동안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이렇게 조례를 고치면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